# 교직원 복무규칙

제정 1983. 5. 25 개정 1994. 3. 15 개정 1997. 9. 12 개정 2000. 8. 22 개정 2004. 12. 7 개정 2009. 8. 4 개정 2011. 10. 12 개정 2012. 10. 24 개정 2014. 4. 11 개정 2014. 11. 26 개정 2017. 1. 31 개정 2019. 8. 20 개정 2019. 10. 2 개정 2020. 2. 21 개정 2022. 4. 6

#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 적)이 규칙은 아주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 강사는 제4조 내지 제4조의5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사항은 「강사 인사규칙」을 따른다. (개정 2019.10.2)
- 제3조(성실의무) 교직원은 복장, 언어, 행동에 있어서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학생지도 및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본 대학교의 재산을 수호하고 물품을 절약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법령 준수의무)** 교직원은 법령과 제규정, 규칙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학교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4조의2(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) ① 교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

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'직장 내 괴롭힘'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교직원은 교원,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9.8.20]

- **제4조의3(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)**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 - 2. 지속·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
  - 3.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- 4.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
  - 5.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
  - 6.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,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  - 7.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
  - 8.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
  - 9.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
[본조신설 2019.8.20]

- 제4조의4(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"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"이라 한다)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  -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.
  -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
  - 2.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
  - 3.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
  - 4.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
  - 5.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
  - 6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
  - 7.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
-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교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 [본조신설 2019.8.20]
- 제4조의5(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)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
  - ②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.
  -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인권센터 운영규칙에

따른다.

[본조신설 2019.8.20]

- 제5조(직장이탈 금지) 교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.
- 제6조(겸임 또는 겸직허용) 교직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교육과 연구 또는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00, 8, 22)
  - 1. 정부기관이나 법인의 비상임 직책에 취임하는 경우
  - 2.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하는 경우
  - 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7조(정치운동의 금지) 교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.
- 제8조(당직근무)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,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, 숙직, 수위,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.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9조(사무 인계·인수) ① 교직원이 전보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  - ②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때에는 인계자,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 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, 인수자가 각1부, 소속 부서장을 거쳐 총무처장이 1부를 보관한다.(개정 2009.8.4)

#### 제 2 장 근 무

- 제10조(근무시간)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(개정 2011.10.12) ② 전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, 학생지도 및 기타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11조(공휴일)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휴무로 한다. 다만,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  - 1. 일요일
  - 2.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
  - 3. 개교기념일
  - 4. 기타 정부 또는 학교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
- 제12조(출근 및 퇴근) ① 교원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강의, 학생지도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직원은 출·퇴근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
- 제13조(결 근) ① 교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(강)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결근(강)계를 제출하여 전일 퇴근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예기치 아니한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(강)하는 경우에는 당일 11:00까지 신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- ②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무계결근으로 한다.
- 제14조(조 퇴)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원을 제출하여 부서장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**제15조(지참, 조퇴 및 무계 결근의 환산)** ① 지참, 조퇴는 3회를 결근 1일로, 무계 결근은 2일의 결근으로 환산한다.
  - ② 무계 결근 5일 이상일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상여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휴 가

- 제16조(휴가의 종류)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, 공가, 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- **제17조(휴 가)** 교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기간 중에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총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8조(연 가) ① 직원의 연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.
  - 1. 삭제(2004.12. 7.)
  - 2. 1년 미만인 자 : 근무 월당 1일
  - 3. 1년 이상인 자 : 15일
  - 4. 상기 1,2,3의 휴가기간은 동·하계로 분할 실시한다. 다만, 동 기간 중 휴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중 사용할 수 있다.
  - 5.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. 다만, 총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② 전 각 호의 근무기간에는 무급휴직 및 직위 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병역 의무 수행 등 법령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- ③ 연가일이 6일 이상일 때에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 실시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 총일수 25일 범위 내에서 총무처장의 허가를 득하여 1회로 실시할 수 있다.(개정 2009.8.4)
  - ④ 총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(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)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.(신설 2004.12. 7)
- 제19조(공 가)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한다.
  - 1. 징병검사나 근무,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
  - 2.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

- 3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
- 4. 천재지변, 교통차단,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

제20조(병 가)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 일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1.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때
- 2. 전염병의 감염으로 인하여 그 교직원의 출근이 학생 또는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-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특별 휴가)**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다.(개정 2011.10.12.) (개정 2020.02.21.) (개정 2022.04.06.)

1. 결 혼

1) 본	인	7일
2) 자	녀	3일
3) 형제자매		1일

2. 회 갑

1) 본인 및 배우자 2일

2)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

3. 출 산

1) 배우자(처) 10일

4. 사 망 (개정 2012.10.24) (개정 2014.11.26)

1)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7일

2)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

3) <삭제 2014.11.26>

4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

5)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일

5. 탈 상

1) 배우자 2일

2)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

3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
- ② 특별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- ③ 여직원은 연간 6일 이내에서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(신설 2011.10.12)

제21조의2(포상휴가) 업무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포상휴가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7.1.31)

- 제22조(휴가의 처리) ① 모든 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  - ② 직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가기간 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출장·당직 및 시간외 근무

- **제23조(출 장)** ① 교직원의 출장은 반드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14.4.11)
  - ② 출장 후에는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4.11)
  - ③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지출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24조(당 직)** 당직 명령을 받은 직원은 당직 근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히 근무 하여야 한다.
- **제25조(시간외 근무)** ① 교직원은 필요에 따라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 도 근무할 수 있다.
  - ② 시간외 근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6조(시행세칙)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8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 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교직원 복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199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199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00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200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이 규칙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이 규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이 규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 <기획팀-10646호: 2020.02.21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기획팀-274호: 2022.04.06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수 신:	총무팀	결 재	담 당		팀 장	장
				계 ——		
소 <del>:</del> 직 <del>:</del> 성 :						
	ŏ· 상기 본인은 년 로 인하여					
		년	월	일		
			위 소속	원 인: 부서(팀)장		인) (인)